

창원지방법원 2019. 7. 26 선고 2018가단115019 판결 [임차권 확인 등 청구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정향,임소라

피 고 1. B

2. C

변론 종결 2019. 7. 12

판결 선고 2019. 7. 26

주 문

1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묘에 대하여는 2018. 10. 9.부터, 피고 C에 대하여는 2018. 11. 23.부터, 각 2019. 5. 31.까지는 연1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1)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8. 6. 22.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D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E, F호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8. 6. 22.부터 2019. 6.21.까지, 보증금 50,000,(W0원,월 차임 100,000원인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다.

나. 위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B은 D의 어머니 행세를 하면서 D로부터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전부 위임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대리인으로 서명하였고, 이에 원고는 피고 B의 계좌로 보증금 50,000,000원을 송금하였다.

다. 그런데 사실은 피고 B은 D의 어머니가 아니고,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다.

피고 B과 C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보증금을 편취한 것이었다.

라.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와 D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함과 동 시에 D로부터 25,000,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.

[인정근거] 원고와 피고 C 사이 :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취지원고와 피고

B 사이 :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

2.판 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편취금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다만, 원고가 D로부터 25,000,000원을 지급받아 위 금원 한도에서는 손해가 전보되었다 할 것이므로,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손해액 2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8. 10. 9.부터, 피고 C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8. 11. 23.부터, 각 2019. 5. 31.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동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(2019. 5. 21.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」부칙 제2조)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

판사 김수정

1) 원고는 D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임차권확인 청구를, 예비적으로 D, G단체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, 뒤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D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, G단체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으므로, 결과적으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만 남게 되었다.